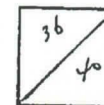


보고번호	회의 차수	회 의 일 자	보 고 자
109	제 18 차	1988.7.7	총재 김 건

보 고 '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' 개정

보고사항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여건을 확충함으로써
은행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, 자본시장의 건전한
발전을 도모하고자 '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'을 개정하여
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증한도를 '상법'상의
회사채발행한도 수준으로 확대하였기 이를 보고함

증 전	개 정
당해기업 자기자본의 150%이내	당해기업 순재산의 2배 범위내에서 자본금과 준 비금 합계액의 2배이내



보고관계
법규조항

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제2조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

금융기관은 '한국은행법'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
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
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~8. (생 략)

9.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
인수업무의 취급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제4조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
대한 보고)

한국은행총재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
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
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 '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' 개정내용